

「동물과 인간이 아름답게 공존하는 사회 만들기」에 의원님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2000년부터 전국 1만 여 회원과 함께, 모든 동물이 인도적인 대우를 받고, 인간과 동물이 생태적·윤리적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실험동물 처우 개선, 선진 반려동물 문화조성, 학대동물 구조 및 보호 등의 운동을 전개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동물보호단체입니다.

저희가 의원님께 서한을 드리게 된 이유는, 이번 임시국회에 발의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4242, 문정림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지지를 요청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화장품법 개정안은 인간의 미를 위해 시행되던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원칙을 명문화 했습니다.

화장품 동물실험은 그 방식의 잔인함과, 불가피한 동물의 희생, 실험의 신뢰도 등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그 존재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화장품 동물실험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커지며, EU는 지난 2004년 화장품 제품 자체에 대한 동물실험을 금지를 시작으로, 2013년에는 화장품 원료에 대해 동물실험을 거친 제품의 판매까지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역시 실험동물의 수를 최소화(Reduction)하고, 대상 동물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등 실험조건을 개선

(Refinement)하며, 가능한 한 대체(Replacement)실험을 실시하는 동물실험의 3R 원칙에 근거하여, 지난 2004년부터 화장품 독성시험 및 동물대체시험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동물대체시험법 11종을 각 회원국이 화장품 심사 시 활용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장품법 개정안은 OECD의 권고안을 기준으로, EU의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규정을 반영하여, 화장품 원료 및 제품에 대한 동물실험을 금지를 원칙화하고, 이미 식약처가 도입한 9종의 동물대체시험법과 올해 도입 완료가 예정된 2종의 동물대체시험법을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化妆품의 안전성과 화장품업계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민의 생명을 위해 중요한 경우이거나, 대체시험법이 개발되지 않은 경우, 화장품 수출 상대국의 법적 요건에 따라 화장품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등의 예외규정을 두어, 동물실험금지를 통한 생명존중의식 확립이라는 대의를 살리면서도, 화장품 산업의 현실과 법안의 적용가능성을 고려하여 균형성과 타당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화장품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인도에 이어 두 번째, 동북아에서 첫 번째로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한 국가가 됩니다. 화장품 동물실험금지는 우리나라를 아시아 지역에서 동물 생명 보호와 동물복지의 선도하는 국가로 만들어 국가이미지 제고와 국격 신장에 큰 도움을 주리라 확신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성은 그 나라의 동물들이 어떻게 대우받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말 못하는 동물의 아픔과 처지를 헤아리고 배려하는 수준이, 곧 인간의 품위와 성숙함의 수준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화장품법 개정안을 지지해주시어, 생명존중사상이 확립된 대한민국, 동물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대한민국 구현에 앞장 서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동물자유연대 1만 회원은 동물과 인간의 조화로운 삶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2015년 4월 14일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 회원 11,463 명 일동-